행복한
대한민국을 여는
정부 3.0

내용연수
10년

내용연수경과
소 화 기
성능확인검사안내



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(분말소화기)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 후 사용기한 연장 가능합니다.

국민안전처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
관련법령

○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개정 '16.1.27. 시행 '17.1.28.)
-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
-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

○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개정 '17.1.26 시행 '17.1.28)
- 내용연수 대상품목 : 분말소화기 (내용연수 10년)

○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(총리령) (개정 '17.2.15 시행 '17.2.15)
-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 실시
  성능확인검사 기간 :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이내
-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 가능

처리절차



❶ 신청서 작성

성능확인 검사신청서 (예시)

신청자의 상호 또는 건물명 입력 (개인일 경우 : 공란)

신청자의 대표자 성명 입력

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(개인일 경우 : 공란)

신청자 사업체의 대표 번호 입력

신청자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 입력 (개인일 경우 : 개인 주소지 입력)

시험시료의 제조업체 및 제조번호 입력

소방대상물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 수량 입력

검사적합증명서 결과 제공 체크
- 직접 받아가시는 경우 : 직접수령 체크
- 택배로 수령하실 경우 : 택배 체크
-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: 우편 체크

시료처리
- 폐기를 원할 경우 : 폐기 체크
- 직접회수를 원할 경우 : 직접회수 체크
- 택배로 받기를 원할 경우 : 택배(착불) 체크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
상 호(건 물 명)	○○○ 주식회사	대표자 성명	홍 길 동
사 업 자 등 록 번 호	123-34-56789	전 화 번 호	031-000-0000
사 업 장 주 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○○동 000번지		

	품 목	검사 수량	시험 시료		
			순번	제조업체	제조번호
검사대상 소방용품	소 화 기	120개	1	(주)○○○○	1559
			2	(주)○○○○	21558
			3	○○주식회사	123
			4		
			5		

검사적합증명서 결과제공(체크)	☐ 직접수령 ☐ 택배 ☑ 우편	시료처리(체크)	☑ 폐기 ☐ 직접회수 ☐ 택배(착불)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5제2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 및 상호)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각 1부. (순번, 품목, 제조업체명, 제조년월, 제조번호 포함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3.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 (별도 송부)	수수료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2제9항에서 규정한 금액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❹ 접수

○ 신청서, 시료 도착 확인 및 수수료(부가세 포함)가 입금되면 접수완료

○ **접수방법 :** 직접방문 또는 우편(택배)

○ **시료 보내는 곳 :**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331 제1연구동(우편번호 17088)
시험인증부 강태영
전화번호(031-289-2838), 팩스번호(031-287-9066)

❺ 시험실시

○ 검사기준

품목	시험항목	시험방법
소화기	본체용기의 내압	「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

❻ 결과통보

○ 성능확인 후 적합할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발급
– 처리기한 20일 이내

※ 접수 및 수수료 입금 문의
– 담당자 전화번호(031-289-2773), 팩스번호(031-287-9064)

※ 시험 문의
– 담당자 전화번호(031-289-2838), 팩스번호(031-287-9066)

폐소화기 수거 및 재활용업체 알림

-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(☎1522-5119) – 국민안전처 설립인가
- 동호이지 (☎010-7300-5116)
- 기타 폐분말소화기 수거 전문업체를 통하여 폐기

❷ 시료추출

○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추출
–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에 한함

○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를 하나의 로트로 구성하여 시료 추출
– 시료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(옥외 또는 주위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 등)의 소방용품을 추출할 것

○ 시료 추출수량

로트 크기(개)	시료 수량(개)
2 ~ 50	2
51 ~ 500	3
501 ~ 35000	5
35001 이상	8

❸ 수수료입금

○ 수수료 단가 × 검사시료수
– (2017년 수수료 단가 : 134,770원)
※ 수수료단가는 연도별 노임단가에 따라 변동됨

○ 온라인 회원가입 업체명과 입금자명 동일하게 입금
– 고객지원센터 접수담당자(031-289-2774)에게 입금확인전화를 주시면 더욱 신속한 접수 가능

○ 입금계좌
- 예 금 주 : 한국소방산업기술원
- 입 금 자 :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
-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006-500-066982　　농　　협 187-01-296221
국민은행 225-25-0000-497　　신한은행 502-01-033335
기업은행 239-025051-04-013



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
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

365일 안전 대한민국을 꿈꾸며, 소방산업진흥과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
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쾌청한 대한민국을 지켜가겠습니다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

(㉾ 446-909) 경기도 용인시 지삼로 331 www.kfi.or.kr
시험) 시험인증부 T.031-289-2838 접수) 고객지원팀 T.031-289-2773